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의뱀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55,280	11,530	0	0		
02월	155,280	11,530	0	0		
03월	155,280	11,530	0	0		
04월	163,280	13,530	0	0		
05월	163,280	13,530	0	0		
06월	163,280	13,530	0	0		
07월	163,280	13,530	0	0		
08월	163,280	13,530	0	0		
09월	163,280	13,530	0	0		
10월	163,280	13,530	163,280	13,530		
11월	163,280	13,530	163,280	13,530		
12월	0	0	163,280	13,530		
연말정산	93,650	6,180				
합계	1,865,730	149,010	489,840	40,590		
총합계	총합계 2,545,17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71,010	0
02월	71,010	0
03월	71,010	0
04월	71,010	0
05월	71,010	0
06월	71,010	0
07월	72,760	0
08월	72,760	0
09월	72,760	0
10월	72,760	0
11월	72,760	0
12월	0	85,00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250,000	
실업크	15,750	
합계	789,860	350,750
	1,140,61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국세고등학교		무배당 삼성 올라 ⁰ 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 험			
보장성	411-83-04	999	608015**	***	750101-*****	고길동	1,143,00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장성	116-81-52	684	A2020-**	***	750101-*****	고길동	99,690
	진주고등학교		스마트가정보장보험1701				
장애인보장 성	613-83-00	605	320171****		000101-****	고영수	1,962,000
	050101-*****	고철수	170101-*****	고둘리			
	인별합계금액		3,204			3,204,69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상 호 보험종류		류			
종류	종류 사업자번호		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광문고등학	학교	무배당 삼성 올라 ⁰ 험	이프 Super보				
보장성	212-82-03	154	609003****		810101-****	홍부인	1,722,730	
	750101-*****	고길동						
	인별합계금액				1,722,73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4-

2. 공제 한도: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광문고등학	학교	무배당삼성화재자녀보험엄마맘 에				
보장성	212-82-03	154	512200****		170101-****	고둘리	489,872
	인별합계금액		489,			489,872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15-95*	푸****	일반	48,330
7-96-04*	A****	일반	1,055,070
8-07-35*	대****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00,000
1-14-58*	광****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60,000
8-91-03*	호****	일반	24,000
3-09-18*	독****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 구 구입비용	1,000,000
4-14-01*	우****	의료기기 구입비	3,50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627,4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26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887,4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07-84*	한****	의료기기 구입비	121,690
4-86-47*	주****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 구 구입비용	1,50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621,69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621,69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6-04*	A****	일반	8,500
2-92-63*	보****	일반	125,800
1-14-58*	광****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59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34,3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595,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729,3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부친	42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14-58*	광****	의료기기 구입비	470,000
3-09-18*	독****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 구 구입비용	2,90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3,370,0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3,370,0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15-95*	푸****	일반	44,200
2-92-63*	보****	일반	9,530
2-90-89*	노****	산후조리원 비용	4,350,000
8-91-03*	호****	일반	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8,7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4,350,000
인별합계금액			4,408,73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0-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92-63*	보****	일반	6,600
8-06-94*	독****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 구 구입비용	251,000
9-32-00*	人 ****	의료기기 구입비	1,15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407,6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407,6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1-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92-10*	성****	일반	8,800
1-14-58*	광****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25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255,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63,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2-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92-63*	보****	일반	5,600
5-82-11*	국****	폐업의료비(비보험제외)	75,200
7-48-00*	한****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4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0,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14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20,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3-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구정급적 계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AAA 실손보험	750101-*****	고길동	32,370
202-81-48370	201640****	750101-*****	고길동	32,370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BBB 사랑보험	750101-*****	고길동	81,720
220-88-52643	201522****	750101-*****	고길동	01,720
인별합계금액				114,09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 성크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CCC 실손보험	810101-*****	홍부인	32,370
202-81-48370	201640****	810101-*****	홍부인	32,370
인별합계금액				32,37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 성크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XXX무배당	750101-*****	고길동	1,077,048
220-88-52643	200920****	170101-*****	고둘리	1,077,046
인별합계금액				1,077,048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 성크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YY손해보험(주)	UUU 실손의료비	810101-*****	홍부인	106,900
201-81-45593	320211****	000101-*****	고영수	100,500
인별합계금액				106,9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대학원	***대학원	**5-83-02***	일반교육비	7,500,000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2-82-03***	일반교육비	2,20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9,700,00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8-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중학교	***중학교	**3-82-06***	일반교육비	55,300
중학교	***중학교	**3-82-06***	현장체험학습비	153,48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55,300
현장학습비	l 합계금액			153,48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2022년 01~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유치원	***유치원	**9-83-02***	일반교육비	1,100,000
학원	***학원	**4-83-00***	일반교육비	2,547,36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3,647,36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2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전문대학	***전문대학	**7-82-05***	일반교육비	6,821,60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7-82-00***	일반교육비	2,760,000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 관	**6-82-01***	일반교육비	68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0,261,600
현장학습비	l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2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수강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단위:원)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
FF 아카데미	**5-85-44***	건축설계 전문과정(Auto CAD)	BIG-2020-1201248	1,200,000
FF 아카데미	**5-85-44***	디지털디자인고급과정(웹접근 성)	BIG-2020-1202663	189,450
엔에스디자인	**7-19-53***	일본어 중급 2	ACE200062191918	552,000
합계금액				1,941,45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22-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 2. 공제대상금액한도 :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교복구입비 지출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학교	**4-83-01	48,000
대양장식	**5-01-59***	345,000
쎈텐학생복 부천점(하이맥스월드)	**0-37-75***	52,000
엘리트학생복	**4-11-05***	214,000
인별합계금액		659,000

-23-

1. 공제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

2. 공제 한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단위: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

(단위:원)

자료제출기관		원리금상환액	
상호	사업자번호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	
(재)한국장학재단	**4-82-10***	537,225	
(주)FF행복기금	**0-87-71***	869,464	
한국주택금융공사	**4-81-86***	613,566	
인별합계금액		2,020,255	

- 1. 공제 대상: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에 한정)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 ※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
 -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24-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2. 공제 한도: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8,024,917	13,369,197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006,157	480,00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12,551,657	480,000	83,540	254,000	13,369,197
1월~6월	8,970,377	231,000	23,220	98,000	9,322,597
7월~12월	3,581,280	249,000	60,320	156,000	4,046,6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일반	8,067,017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전통시장	78,000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대중교통	83,5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5-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도서공연등	74,000
신용카드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일반	4,484,640
신용카드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402,000
신용카드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180,000
인별힙	계금액			13,369,197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523,695	4,118,64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3,972,590	0	146,050	0	4,118,640
1월~6월	904,720	0	61,400	0	966,120
7월~12월	3,067,870	0	84,650	0	3,152,5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일반	3,972,590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대중교통	146,050
인별힙	계금액			4,118,6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7-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647,420	345,35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23,710	112,6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112,620	232,730	0	345,350
1월~6월	0	62,000	103,230	0	165,230
7월~12월	0	50,620	129,500	0	180,1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1-86-61717	KK₹ト⊑	전통시장	112,620
신용카드	101-86-61717	KK₹ <u>F</u>	대중교통	232,730
인별합	·계금액			345,35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8-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818,230	7,397,397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83,710	270,41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6,518,537	270,410	160,800	447,650	7,397,397
1월~6월	2,142,283	35,510	112,900	184,610	2,475,303
7월~12월	4,376,254	234,900	47,900	263,040	4,922,09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447,650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6,518,537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270,41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9-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60,800
인별합계금액				7,397,397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648,080	2,797,723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48,510	638,67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638,673	435,180	1,723,870	2,797,723
1월~6월	0	5,000	0	813,460	818,460
7월~12월	0	633,673	435,180	910,410	1,979,26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408-81-85459	(주)VV페이	도서공연등	600,890
직불카드 등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7,000
직불카드 등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1,115,980
직불카드 등	605-81-39783	주식회사 마이비	전통시장	638,673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1-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2-81-21843	(주) SS은행	대중교통	435,180
인	별합계금액			2,797,723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부친	42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200,000	800,0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800,000	0	0	0	800,000
1월~6월	400,000	0	0	0	400,000
7월~12월	400,000	0	0	0	4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605-81-39783	주식회사 마이비	일반	800,000
인	별합계금액			80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3-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831,864	2,352,611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480,530	490,1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1,540,761	490,180	182,410	139,260	2,352,611
1월~6월	283,359	197,400	49,910	93,710	624,379
7월~12월	1,257,402	292,780	132,500	45,550	1,728,232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1-86-61717	KK카 <u>드</u>	일반	1,540,761
직불카드 등	101-86-61717	KK카 <u>드</u>	대중교통	182,410
직불카드 등	109-81-53365	코나아이 (주)	전통시장	490,180
직불카드 등	201-81-68693	(주)국민은행	도서공연등	139,26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4-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인	별합계금액			2,352,611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941,531	3,463,832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3,463,832	0	0	0	3,463,832
1월~6월	2,213,330	0	0	0	2,213,330
7월~12월	1,250,502	0	0	0	1,250,502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9-81-53365	코나아이 (주)	일반	3,463,832
인	별합계금액			3,463,832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6-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564,830	4,000,0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0	0	4,000,000	4,000,000
1월~6월	0	0	0	2,000,000	2,000,000
7월~12월	0	0	0	2,000,000	2,0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408-81-85459	(주)VV페이	도서공연등	4,000,000
인	별합계금액			4,00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7-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30,000	1,861,64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0,000	205,3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856,310	205,330	800,000	0	1,861,640
1월~6월	537,570	124,820	400,000	0	1,062,390
7월~12월	318,740	80,510	400,000	0	799,25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전통시장	205,33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대중교통	800,00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XX플레이(주)	일반	856,31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8-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인별합계금액				1,861,64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800,0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0	800,000	0	800,000
1월~6월	0	0	400,000	0	400,000
7월~12월	0	0	400,000	0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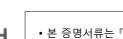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대중교통	800,000
인	별합계금액			80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부친	42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205,33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205,3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205,330	0	0	205,330
1월~6월	0	124,820	0	0	124,820
7월~12월	0	80,510	0	0	80,51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전통시장	205,330
인	별합계금액			205,33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1-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4,000,0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0	0	4,000,000	4,000,000
1월~6월	0	0	0	2,000,000	2,000,000
7월~12월	0	0	0	2,000,000	2,0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도서공연등	4,000,000
인별합계금액				4,00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2-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856,31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856,310	0	0	0	856,310
1월~6월	537,570	0	0	0	537,570
7월~12월	318,740	0	0	0	318,74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XX플레이(주)	일반	856,310
인별합계금액				856,31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3-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2,940,0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2,940,000	0	0	0	2,940,000
1월~6월	1,870,000	0	0	0	1,870,000
7월~12월	1,070,000	0	0	0	1,07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XX플레이(주)	일반	2,940,000
인별합계금액				2,94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4-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4,555,697	6,034,771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4,489,887	4,381,054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505,887	4,381,054	765,220	382,610	6,034,771
1월~6월	351,833	0	382,610	382,610	1,117,053
7월~12월	154,054	4,381,054	382,610	0	4,917,718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5-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크에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62,723	243,000	46,11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7,700	10,000	505,887
		134,354	2,000	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리		0	0	0	0	
	전통시장거래	0	0	7,700	10,000	4,381,054
		134,354	4,000	4,225,000	0	
		0	0	0	46,110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111,000	225,500	111,000	46,110	765,220
		0	0	0	225,500	
현금영수증 도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46,110	
		111,000	225,500	0	0	382,61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4,728,260	258,4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250,70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7,700	250,700	0	0	258,400
1월~6월	0	243,000	0	0	243,000
7월~12월	7,700	7,700	0	0	15,4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7-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	01월	02월	03월	04월	공제대상금액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 · · · · · · · · · · · · · · · · · ·
		0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7,700	0	7,700
		0	0	0	0	
		0	0	243,00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7,700	0	250,700
		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911,574	972,297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000	62,723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144,354	62,723	765,220	0	972,297
1월~6월	0	62,723	382,610	0	445,333
7월~12월	144,354	0	382,610	0	526,96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9-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	일반거래	0	0	0	10,000	144,354
		134,354	0	0	0	
		0	62,723	0	0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0	62,723
		0	0	0	0	
	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0	0	46,110	
현금영수증		111,000	225,500	0	46,110	765,220
		111,000	0	225,50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부친	42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49,754	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42,054	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0	0	0	0
1월~6월	0	0	0	0	0
7월~12월	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1-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부친	42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일반거래	0	0	0	0 0	
현금영수증		0	0	0	0	0
		0	0	0	0	
	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0	
현금영수증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134,553	4,988,847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43,000	206,777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4,510,460	206,777	46,110	225,500	4,988,847
1월~6월	0	62,723	46,110	225,500	334,333
7월~12월	4,510,460	144,054	0	0	4,654,51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7,700	0	4,510,460
		0	0	0	4,502,760	
	전통시장거래	0	62,723	0	0	
현금영수증		0	0	7,700	0	206,777
		134,354	2,000	0	0	
		0	0	0	46,11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0	0	0	46,110
		0	0	0	0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현금영수증		0	225,500	0	0	225,50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56,110	134,354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56,110	134,354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134,354	0	0	134,354
1월~6월	0	0	0	0	0
7월~12월	0	134,354	0	0	134,35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5-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78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0		
	전통시장거래	0	0	0	0	134,354
		0	0	0	134,35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768,777	12,000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64,723	12,00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0	12,000	0	0	12,000
1월~6월	0	0	0	0	0
7월~12월	0	12,000	0	0	12,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7-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저	l대상금액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0
		0	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0	10,000	12,000
		0	2,00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0	0	0	0
	0	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개인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증권번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납입금액 계
W중앙회	219-82-01220	044112****	1996-07-23	2023-07-23	2,760,000
C금융투자	116-81-36684	030011****	1994-08-25	2023-08-25	3,300,000
합계					6,060,000

※ 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	번호	ISA계좌만기 전환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4-82-02152	4,200,000	0	4,200,000
33042	7****	0	0	0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6-81-03693	1,266,680	0	1,266,680
069052****		1,086,680	0	1,086,680
순납입금	금액 합계			5,466,68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60-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연금구분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주) NN은행	202-81-14695	1,000,000	0	1,000,000
9199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0	0
(주) NN은행	202-81-14695	4,339,527	0	4,339,527
6899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89,527	0	589,527
순납입금	금액 합계			5,339,527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 2. 공제 대상: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61-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사업사인모)	(영급명)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내장책
UU공사 (200.06.2001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주	2019-08-31 2039-08-31	20년	2021-08-30	2021-08-31	1,770,512	1,770,512
(209-06-29912)	00명사 209-06-29912) (주택자금대출(주 택구입자금대출))	25,000,000	0	25,000,000	0	_/ /	,,
NN주식회사 (104.86.2074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	2015-05-15 2035-05-15	20년	2022-01-02	2022-01-02	7,167,652	5,000,000
(104-00-39742)	(104-86-39742) (주택자금대출)		0	0	0	, ,	, ,

-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WW은행	201-81-02819	132040****	2012-05-31	1,515,720
(주) 국민은행	201-81-68693	648009****	2017-08-26	3,223,401
(주) 국민은행	201-81-68693	648009****	2018-07-28	1,984,847
합 계				6,723,968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63-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월세액]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월세액 지급내역 (단위:원)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서상 주소지	계약면적 (m²)	지급액 계
(신용카드) 405-01-12241	2018-02-18~ 2022-0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XX아파트 106동 2104호	52	10,000,000
(공공임대)PP공사LL관리소 128-82-11719	2022-09-01~ 2023-03-07	서울특별시 강동구 UU오피스텔 541동 605호	105	2,000,000
합 계				12,000,000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
- 3. 공제율 : 15%.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는 제외)는 17%
- 4.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4-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2022년 01~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QQ 은행 (617-19-68038)	431807****	청약저축	청약저축	1981-05-28	1,200,000
디자인 이상 (209-06-32493)	527107****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2-06-16	600,000
MM은행 (310-06-89734)	36591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05-12	1,200,000
합 계					3,000,000

-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65-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가입일자	연납입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중소기업은행 (202-81-00978)	250084****	KKK 10년투자 증권투자신 탁	2014-04-30	6,000,000	2,400,000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116-81-34691)	854755****	(청년형)UUU 증권 투자신 탁	2022-03-26	500,000	200,000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 거주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일련번호: 20221229-01580150

-6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투자금액 명세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22	(주) 국민은행 (201-81-68693)	203155****	DDD 코스닥벤처	118,698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투자금액 명세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21	(주) 국민은행 (201-81-68693)	244055****	KKK 벤처 증권투자	1,000,000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투자금액 명세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20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116-81-34293)	200208****	BBB투자신	1,200,000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6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공제부금 납입현황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입일자 / 개정규칙 적용 여부	납입방법
201609****	2016-09-22	Oll h(Month)
201009	Y	월 납(Month)

(단위:원)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2022-01-25	750,000	07 월	2022-07-25	750,000
02 월	2022-02-27	750,000	08 월	2022-08-25	750,000
03 월	2022-03-27	750,000	09 월	2022-09-03	750,000
04 월	2022-04-25	750,000	10 월	2022-10-25	250,000
05 월	2022-05-25	750,000	11 월	2022-11-27	250,000
06 월	2022-06-26	750,000	12 월	2022-12-26	250,000
납입금액 계					7,500,000

1.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7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_**	*1	정치자금기부금	1,000	1,000	0
116-82-14426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법정기부금	50,000	50,000	0
인별합계금액					51,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08-82-05789	사회복지법인 한국 컴패션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10,000	210,000	0
인별합계금액					21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14-82-08077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200,000	1,200,000	0
인별합계금액					1,20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2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_**	*2	정치자금기부금	26,000	26,000	0
인별합계금액					26,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장애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증명자료 발급기관/장애내용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장애내용
보건복지부	138-83-00370	1

※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무능력이 없는 자 : 2

-7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장애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증명자료 발급기관/장애내용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장애내용
보건복지부	138-83-00370	1

※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무능력이 없는 자 : 2

-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장애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부친	420101-*****

■ 증명자료 발급기관/장애내용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장애내용
국가보훈처	116-83-00138	2

※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무능력이 없는 자 : 2

-7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